



KIM JOHNSON  
DIRECTOR

STATE OF CALIFORNIA—HEALTH AND HUMAN SERVICES AGENC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744 P Street • Sacramento, CA 95814 • [www.cdss.ca.gov](http://www.cdss.ca.gov)



GAVIN NEWSOM  
GOVERNOR

2020 년 8 월 27 일

PIN 20-15-CCP

수신인: 어린이 보육시설 면허 소지자 및 서비스 제공자 전체

발신인: *고지 원본 서명자 - Pamela Dickfoss(파멜라 디포스)*  
PAMELA DICKFOSS(파멜라 디포스)  
정책관(Deputy Director)  
지역공동체 건강관리 면허 사무국(Community Care Licensing Division)

제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관련 아동 보육 환경 최신 변경 정보**

### 서비스 제공자 정보 고지(PIN) 요약

PIN 20-15-CCP 는 모든 아동 보육 환경 시설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주지사 사무소가 발효한 최신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지침을 제공합니다. 본 고지와 주 전체에 발효 중인 COVID-19 관련 최신 변경 지침은 직원 대 원아 비율 요구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6 월 30 일에 만료된 고지 [PIN 20-06-CCP](#) 와 [PIN 20-04-CCP](#) 를 대체합니다.

주지사 사무소는 캘리포니아 사업체들이 다시 사업을 재개함에 따라 주 전체에 COVID-19 지침을 발표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전파 및 감염 위험도를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 복지 사무국, 사회 복지 사무국 및 캘리포니아-직업 안전 위생 관리국(Cal-OSHA)가 협력하여 본 지침을 작성하였습니다. COVID-19 관련 최신 변경 지침: 아동 보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자 내용은 다음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ovid19.ca.gov/pdf/guidance-childcare.pdf>. 본 지침은 직원 대 원아 비율 요구 사항과 관련된 고지 [PIN 20-06-CCP](#) 와 [PIN 20-04-CCP](#) 의 지침을 대체합니다.

본 고지 발송과 함께 효력이 발효되어 주 전체에 적용되었던 직원 대 원아 비율 수정 면제 조항이 철회되며 서비스 제공자는 캘리포니아 법령 제 22 조 제 12 부, 제 [101216.3](#) 항, 제 [101216.4](#) 항, 제 [101416.5](#) 항, 제 [101516.5](#) 항, 제 [101616.5](#) 항 및 제 [102416.5](#) 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직원 대 원아 대체 비율을 적용하여 서비스를 운용하고자 하는 아동

보육 서비스 제공자는 현지 지역 사무소에 면제 조항 적용을 요청해야 하며 접수된 요청건은 사례별로 검토됩니다.

캘리포니아의 재택 명령 수정 로드맵과 관련된 추가 자원은 다음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가족에게 우호적인 관행](#)
- [근로 가정 지원](#)
- [조기 학습과 건강 관리 전략\(Playbook\)](#)

COVID-19 관련 공중 보건 응급 상황에 대한 질문은 사무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일반 질문 상담 이메일 [CCLCOVID-19INFO@dss.ca.gov](mailto:CCLCOVID-19INFO@dss.ca.gov) 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기타 아동 보육 관련 질의는 [현지 지역 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